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(남인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84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8.

발 의 자 : 남인순 · 허종식 · 손명수
한민수 · 오세희 · 이학영
김선민 · 백선희 · 이정문
김 윤 · 서영석 · 이수진
최혁진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.

그러나 수급권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인 경우나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수급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직권 신청을 할 수 없어 신속한 보호가 어려운 상황임.

이에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, 위기상황 등 경우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,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여 신속한 수급자격 조사 및 급여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이와 더불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

과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 등 우대 조치와 더불어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고, 수급자가 스스로 급여를 관리·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급여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1조, 제23조의2 등).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3항)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8항(종전의 제6항) 중 “제1항 및 제2항”을 “제1항부터 제3항까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9항(종전의 제7항) 중 “제3항”을 “제5항”으로 한다.

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직권 신청한 사실을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

④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「감사원법」 및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.

다만, 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.

제23조의2제1항 중 “제21조제3항”을 “제21조제5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1조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5항에 따른 동의 서면 없이 금융기관의 장에게 수급권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2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7조의4(의사무능력자의 급여관리) 보장기관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으로 수급자가 스스로 급여를 관리·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.

제4장에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1조의2(인사상 우대 조치 등)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수급권자의 발굴, 지원 및 자활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하거나 그 밖에 표창 수여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~ ⑦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27조의4(의사무능력자의 급여관리) 보장기관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으로 수급자가 스스로 급여를 관리·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.

제31조의2(인사상 우대 조치 등)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수급권자의 발굴, 지원 및 자활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하거나 그 밖에 표창 수여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